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6. 10. 8.>

제 호

행정처분 통지서

상호(명칭)			
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			
사업자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주 소			
행정처분 내용			

귀 사업장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.

※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해양경찰서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